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곽규택·조승환·박지원
김용태·유상범·신성범
김상훈·강대식·배준영
강승규·조지연·강명구
서천호·최은석·서범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(校舍), 교사용 대지, 체육장, 교지(校地)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시설·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.

지역 내 초·중등학교의 설치 여부 및 접근성 등은 거주지 선택 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구감소지역 내 초·중등학교의 설립은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.

그런데 초·중등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·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초·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초·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·

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
것임(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「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